##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52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한병도·허 영·이해식

이정문 • 이기헌 • 조계원

강득구・조 국・임오경

정태호 • 박 정 • 박수현

윤건영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 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	
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u>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
	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할 것을 직접 대통령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